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 272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0. 7.

복지문화 위원회
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2020. 7. 15.

복지문화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
- 제 출 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여성가족과장)
- 제출일자: 2020. 7. 3.
- 회부일자: 2020. 7. 3.
- 검토기간: 2020. 7. 6. ~ 2020. 7. 13.

2. 제안이유

- 공보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
-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을 추진하여 전환 희망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신청하고
- 기존 국공립 사랑별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0. 10. 31.자로 도래함에 따라
- 관리동어린이집 및 재위탁(재계약) 위탁체 선정을 위한 달서구 보육 정책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의 2, 제4조의3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대상시설

시설명	소재지	시설규모 (연면적, m ²)	정원/현원	위탁체 (원장)	비고
미리샘어린이집	한실로 134 (도원동, 미리샘마을)	176	41/32	김주희	관리동 어린이집 전환
아람어린이집	한실로 30 (도원동, 아람마을)	163.57	38/35	김경숙	
다솜어린이집	상화로 370 (상인동, 장미아파트)	200.50	46/26	한정희	
우방미래어린이집	용산로 160 (용산동, 우방죽전타운)	151	35/21	정재영	
캐슬어린이집	장산남로 33 (용산동, 롯데캐슬)	180.64	42/42	최경순	
한별어린이집	이곡공원로 33 (이곡동, 성서동서화성타운)	181.85	49/43	정태옥	
사랑별어린이집	월성로 132 (월성동, 이편한세상월배)	184.06	42/42	사회복지 법인 궁전 (김현미)	

나. 위탁개요

○ 위탁내용

- 어린이집 운영(아동 입소·상담 등 보육, 인사·회계 등)
- 어린이집 시설 및 물품 등 재산관리

○ 위탁기간: 5년

-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6개소: 2020. 11월경 ~ 2025. 10월경
※ 향후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사랑별어린이집: 2020. 11. 1. ~ 2025. 10. 31.

○ 위탁체 선정 방법: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

○ 위탁체(수탁자):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

4. 관련근거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15조(위탁운영)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의2

5. 검토의견

- 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 구는 현재 민간 어린이집을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일련의 정책을 추진 중.
- 금번 동의안에 반영된 공립 전환 대상 시설은 앞 (2쪽의) 표와 같이 '미리샘어린이집' 등 총 6곳으로서 집행부는 동 전환 대상 시설의 수탁 운영업체 선정을 위해 2020년 6월 5일, <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>를 개최, 심의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(예: 미리샘어린이집 경우, 김주희씨: 앞 표 참고)을 각각 해당 어린이집의 수탁 운영자로 선정함.
- 한편, 같은 표의 '사랑별어린이집'은 신규 전환 대상 시설이 아니라, 지난 5년(2015. 11. 1.~2020. 10. 31.)동안 '사회복지법인 궁전'에 위탁 운영했던 시설로서, <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>는 향후 5년(2020. 11. 1.~2025. 10. 31.)동안에도 동일 '사회복지법인 궁전'이 계속 수탁 운영토록 그 운영자로 선정함.
- 집행부는 상기와 같은 총 7곳의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결과에 대해 현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금번 동의안을 제출함.
- 상위 법령 (「영유아보육법」)에 따르면, 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의 운영 실적,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 능력,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수탁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, 위 7곳의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방식의 적절성 여부는 물론, 나아가 현행 달서구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의회 동의 절차 규정(**후단 별첨**)과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위원회차원에서의 추가 논의는 필요하다고 사료됨.

【관련 법규】

【영유아보육법】

제24조 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기준에 따라 심의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

【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】

제15조(위탁운영)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범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개인은 영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.

【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】

제2조(정의)

3. “재위탁”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[신설 2019. 5. 21.]

4. “재계약”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[신설 2019. 5. 21.]

제4조의 2(의회동의 및 보고)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위탁 또는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[신설 2019. 5. 21.]